

전주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단67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성훈

변 론 종 결 2021. 8. 11.

판 결 선 고 2021. 8. 25.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9,660,834원과 그 중 39,660,216원에 대하여 2020. 3. 9.부터 2020. 3. 19.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6. 체결한 매매계약을 43,693,1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43,693,13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7. 9. 26.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C은행에 제출하고, C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은 위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외에도 D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9. 10. 1.경부터 위 채무들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20. 1. 2.경 위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20. 3. 9. C은행에게 42,145,96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2020. 3. 9. 2,462,030원, 2020. 3. 10. 23,722원 합계 2,485,752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적용되는 손해금율은 2018. 11. 21. 이후부터는 연 9%이다.

라. 피고 A은 2019. 10. 16. 피고 B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0. 28.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날인 2019. 10. 29.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당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200,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군산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과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에 대한 각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구상금으로 39,660,834원{= 39,660,216원(= 대위변제금 42,145,968원 - 회수금 2,485,752원) + 618원(위 회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그 중 39,660,216원에 대하여 2020. 3.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3. 19.까지는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피고 A이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C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9. 10. 1.경부터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 A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다투나,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고,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피고 B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는 그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그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데 그 피담보채무액은 200,000,000원이고,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시점인 2020. 12. 8.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312,674,730원 상당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2021. 1. 14.까지의 원리금 합계액이 계산상 43,693,138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금액의 범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뺀 112,674,730원(= 312,674,730원 - 200,000,000원) 보다 적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43,693,1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43,693,13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경평

부 동 산 목 록

1. 전라북도 군산시 G 공장용지 1,067.8㎡

2. 전라북도 군산시 G H동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I

 철골조 철골트러스지붕 단층 공장 425㎡

3. 전라북도 군산시 G J동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I

 경량철골조 티100샌드위치지붕판넬 단층 공장 171㎡, 끝.

